



제1605호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058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규 칙 제 1059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

훈 령

- 훈 령 제 386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13

공 고

- 공 고 제 768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
- 공 고 제 774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2
- 공 고 제 780 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 청서류 열람 공고 25
- 공 고 제 78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30
- 공 고 제 784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33
- 공 고 제 797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5
- 공 고 제 801 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 공사완료 공고 44
- 공 고 제 802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서창2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45
- 공 고 제 806 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 례 일부개정 계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6
- 공 고 제 809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7
- 공 고 제 815 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4

회 람								
----------------	--	--	--	--	--	--	--	--

○ 공	고 제 8 1 7 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84
○ 공	고 제 8 1 8 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85
○ 공	고 제 3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6
○ 공	고 제 3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8
○ 공	고 제 3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9

고 시

○ 고	시 제 5 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90
○ 고	시 제 5 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소로1-5호선)사 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96
○ 고	시 제 5 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05

규 칙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58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
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과장(5급)의 복수직렬 조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장의 직급(렬) 규정(제14조)
 - 식품위생과장(5급) 복수직렬 조정에 따른 과장의 직급(렬) 규정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규 칙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15일

남동구 규칙 제1059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84	763	23	128	13	357(10)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79	758	23	128	13	357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지방서기관	6	5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9	37	2	9	1	20
행정	29	16	2			11
의무	4			4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6			1	3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6급 소계	318	196	8	23	3	88
행정	116	61	5			50(10)
세무	14	14				
사회복지	15	5				10
숙 기	1		1			
공업	2	2				
녹지	3	3				
보건	2			2		
환경	5	5				
시설	21	21				
전산	1	1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3	10			1	2
행정·사회복지	42	17	1			24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6	5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9	19				
행정·전산	2	2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공업 · 환경	3	3				
공업 · 시설	3	3				
보건 · 의료기술	2			2		
보건 · 간호	5			5		
의료기술 · 간호	3			3		
시설 · 해양수산	1	1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1				
행정 · 속기 · 사무운영	1		1			
행정 · 농업 · 수의	2	2				
행정 · 녹지 · 환경	1				1	
행정 · 보건 · 간호	5			3		2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4			4		
7급 소계	460	283	10	45	5	117
행 정	166	98	5		2	61
세 무	31	31				
사회복지	69	22				47
속 기	2		2			
사 서	3	3				
공 업	7	6	1			
농 업	4	4				
녹 지	8	8				
수 의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1			1		
간 호	12			12		
간호조무	1			1		
환 경	12	12				
시 설	45	45				
전 산	9	9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방송통신	4	4				
운 전	12	5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3	3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6	6				
행정·전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4			4		
보건·간호	15			15		
의료기술·간호	5			5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345	190	2	46	4	103
행 정	128	83	2			43
세 무	6	5			1	
사회복지	80	30				50
사 서	5	5				
공 업	8	8				
농 업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4			1	
보 건	14	1		13		
의료기술	4			4		
간 호	24			24		

환 경	4	3			1	
해양수산	1	1				
시 설	26	26				
전 산	3	3				
방송통신	3	3				
운 전	5			1		4
사무운영	4	1				3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5	2				3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3	3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9급 소계	77	44		4		29
행 정	30	15				15
세 무	4	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12	1		1		10
사 서	6	6				
공 업	1	1				
녹 지	1	1				
보 건	2			2		

의료기술	1			1		
시 설	10	10				
방송통신	1	1				
행정 · 세 무	1	1				
행정 · 사회복지	5	1				4
행정 · 녹지	1	1				
행정 · 방재안전	2	2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훈 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4월 15일

남동구 훈령 제386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직 중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28	
보 건 행정과	계		37	
	일반직	소 계	37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3	의무2, 행정·보건·간호1
		6 급	8	운전1, 행정·보건1, 보건·의료기술2, 보건·간호1, 의료기술·간호2, 행정·보건·간호1
		7 급	17	보건·의료기술4, 보건·간호7, 의료기술·간호5, 간호조무1
		8 급	6	보건1, 의료기술1, 간호1, 운전1, 보건·의료기술1, 행정·보건·간호1
9 급	2	보건1, 의료기술1		
건 강 증진과	계		35	
	일반직	소 계	35	
		5 급	3	의무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1, 의료기술·간호1,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12	의료기술1, 간호8, 보건·간호3
		8 급	16	보건2, 간호13, 보건·의료기술·간호1
치매정신 건강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2,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7	간호4, 보건·간호3
		8 급	11	간호9, 의료기술2
		9 급	2	사회복지1, 보건1
식 품 위생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행정·보건·간호1
		6 급	4	보건2, 행정·보건2
		7 급	6	보건6
		8 급	10	보건10
간석건강 생활지원 센터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 급	1	보건·간호1
		6 급	3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7 급	3	보건1, 보건·간호2
		8 급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6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57	
구월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1	행정1
구월2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사무운영1
		9 급	1	행정1
구월3동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4,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9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구월4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사무운영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운전1
		9 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간석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1,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간석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간석3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간석4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사회복지1
		9 급	1	행정1
만수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9 급	2	사회복지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만수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만수3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만수4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5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간호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6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4, 사회복지3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장수창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복지1
		6 급	5	행정3,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장수창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복지1
		6 급	5	행정3,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3, 사회복지1
		9 급	1	행정·사회복지1
서창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7	행정3, 사회복지4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남도림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간호1
		7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전화상담운영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 급	1	사회복지1
논현1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논현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논고잔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공업·환경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복수직렬 조정으로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동 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재난대응 등 부서(기관) 간 협업 및 종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5급 및 6급 복수직렬 조정
 - 직속기관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동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68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모9294외 14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21. 4. 8.(목) ~ 4. 23.(금)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21년 4월 8일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1년 3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모9294	신*훈	2021-03-1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5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동 ****호 (간석동, **아파트)
2	**무5969	김*관	2021-03-17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 (간석동, ****아파트)
3	****타3477	남**준	2021-03-18	수취인불명	불법등화 설치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_**, *동 ***호 (간석동, **빌라)
4	**서7158	차*성	2021-03-22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 (서창동, 인천서창*****단지)
5	**누1000	이*운	2021-03-22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_**, ***호 (논현동)
6	**서4450	한*규	2021-03-23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_*, *동 ***호 (구월동, **빌라)
7	**소9198	(주)***린	2021-03-23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번길 **, *호 ***프라자 (구월동, ***프라자)
8	**고4077	태*오	2021-03-23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번길 **, ****-B호 (논현동, *** ** 오피스텔)
9	**버1241	노*권	2021-03-23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6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논현**** 마을)
10	****아3025	한*수	2021-03-30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044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나길 **_*, (한남동)
11	**버6876	박*남	2021-03-3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아파트)
12	**조6065	전*윤	2021-03-31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3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_*, ***호 (구월동)
13	**마0437	박*순	2021-04-02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아파트)
14	**마4872	권*주	2021-04-02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층 (구월동)
15	**버1384	손*현	2021-04-06	폐문부재	불법등화 설치	21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 (만수동, ****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7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일반여행업)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대표자 주소 또는 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21. 04. 09. (금) ~ 2021. 04. 24. (토) (15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상 호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점**방	기타유원시설업 (제2019-3호)	김*은	인천 남동구 포구로 **, *층 (논현동)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봉**팡	기타유원시설업 (제2016-2호)	임*은	인천 남동구 인하로 ***, ***호 (구월동)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그레****풀	기타유원시설업 (제2019-1호)	신*철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 *층 (논현동)	휴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구월****팡	일반유원시설업 (제2019-1호)	김*령	인천 남동구 성말로 *, ***호 (구월동)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미준수	시정명령

4.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청문장소 및 의견제출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6층 문화관광과(만수동, 남동구청)
- 담 당 자 : 박호형(☎032-453-2143, FAX: 032-453-2139)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오.

※ 만일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80호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1-58호(2011.7.22.)로 사업시행인가 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4. 15. ~ 2021. 4. 29.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8393)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99번길 29, 3층 ☎032-421-488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수용재결신청 사업 열람공고 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 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7	2,804.05	4,167,745,400	118	991,685,680	11	212,089,700	5,371,520,780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421-4881, (fax 032-422-4882) 김종대 010-4336-1092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	--

[별지1기재] ①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연번	수용토지의 표시					⑦소유자		⑧관계인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적 (㎡)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공부	실제								
1	간석동	495-3	전	전	181.000	박*숙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43번길 1*, 206동 20*호(운서동, 풍림*이원아파트)					
1-1	간석동	495-46	전	전	2.000							
2	간석동	498-30	도	도	55.138	이*옥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					
2-1	간석동	498-31	도	도	16.259							
3	간석동	498-30	도	도	50.431	김*수	인천 남구 간석동 498-1*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3-1	간석동	498-31	도	도	14.871								
4	간석동	498-30	도	도	50.431	기*진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						
4-1	간석동	498-31	도	도	14.871								
5	간석동	499-4	대	대	352.000	김*연	인천 남구 주안동 11*6 안*아파트 1동 40*호						
6	간석동	499-14	도	도	1025.000	원*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7-1*, 에이동 30*호(간석동, 드*시티빌라)	*인천세무서 (재산세과-티91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구월동 1447-*)			
6-1							인천광역시*동구(세무2과-9964)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갈로 2* 체납정리팀 1반 납세협력담당관				
7	간석동	499-26	대	대	131.000	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간석동)	인천*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3*(간석동)			
7-1							인천*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8-2*				
7-2							인천*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8-2*				
7-3							인천*암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 남동구 간석동 518-2*				
8	간석동	499-53	대	대	57.000	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 103동 230*호(간석동, 간석마을*림아아파트)						
9	간석동	499-53	대	대	57.000	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17번길 1*(간석동)						
10	간석동	499-53	대	대	57.000	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8번길 2*(간석동)						
11	간석동	499-53	대	대	57.000	조*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 507동 90*호(산곡동, 현*아파트)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12	간석동	499-53	대	대	57.000	조*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68번길 4*, 105동 300*호(논현동, 인천논현*스테이트)					
13	간석동	499-57	대	대	127.000	권*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9-5*					
14	간석동	499-82	도	도	2.000	조*훈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2-5*.617-5* 목*빌라 1-30*	한국*택금융공사	가압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인천지사)		
14-1								*인천세무서(개인납세1과-티14177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구월동 1447-*)		
15	간석동	499-83	도	도	14.000	김*식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 현*아파트 101동 40*호	주식회사 행*기금	가압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역삼동)		
15-1								평*세무서(세무과-6823)	압류	경기도 평*시 죽백6로 6(죽백동) 24*(비전동)		
16	간석동	513	대	대	366.000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3*, 10*호(간석동)	주식회사 국*은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여의도동)		
16-1								주식회사 국*은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여의도동)		
17	간석동	515-7	답	답	35.000	정*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로 9, 가동20*호(간석동, 청*빌라)					
17-1	간석동	515-5	답	답	2.000							
18	간석동	514	대	대	33.050	성*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독산동 289-*	금*세무서(세무2과-9904)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독산동)		
18-1								금*세무서(조사과-2514)	압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독산동)		
18-2								*인천세무서(세무과-25617)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구월동 1447-*)		
19	간석동	516-41	도	도	35.000	지*길	인천시 남구 주안동 436-*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20	간석동	495-26	전	전	3.273	손*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2-1*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		
20-1								남동*업협동 조합	가압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신만수지점)		
21	간석동	495-26	전	전	2.182	이*원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		
21-1								남동*업협동 조합	가압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신만수지점)		
22	간석동	495-26	전	전	2.182	이*원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		
22-1								남동*업협동 조합	가압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신만수지점)		
23	간석동	495-26	전	전	2.182	이*원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		
23-1								남동*업협동 조합	가압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신만수지점)		
24	간석동	495-26	전	전	2.182	이*태		서울*증보협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		
24-1								남동*업협동 조합	가압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신만수지점)		
	합계				2,804. 0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8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4.12. ~ 2021.4.26.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강제처리 공고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이륜차 5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1년 4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06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16.
- 견인일 : 2021.3.11.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소래역서로2번길 36 옆 인도변

2021-000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26.
- 견인일 : 2021.3.22.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66 앞 인도

2021-0007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26.
- 견인일 : 2021.3.19.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장자로 41 청봉산에들에 건너편

2021-0007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26.
- 견인일 : 2021.3.18.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643-8 앞

2021-0007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2.26.
- 견인일 : 2021.3.18.
-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남동구 고잔동 644-1번지 앞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서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06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소래역서로2번길 36 옆 인도변	2021.3.11.	기전산업(주)폐차 사업소	032-814-4400
2	2021-0007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66 앞 인도	2021.3.22.	기전산업(주)폐차 사업소	032-814-4400
3	2021-0007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장자로 41 청봉산에들에 건너편	2021.3.19.	기전산업(주)폐차 사업소	032-814-4400
4	2021-0007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643-8 앞	2021.3.18.	기전산업(주)폐차 사업소	032-814-4400
5	2021-0007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고잔동 644-1번지 앞	2021.3.18.	기전산업(주)폐차 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8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4.12. ~ 2021.4.26.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6도2958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1년 4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 록 번 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024	26도2958	인피니티FX35	L** Y*****G 8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2**번길 *1-*4, *0*호(**동)	(주)서울페차사업소/ 2021.2.9.	서울 송파구(주차관리과) 인천 남동구(환경보전과, 자동차관리과, 세입징수과) 서울 구로구(주차관리과)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인천남동경찰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경제교통과) 경기 구리시(자동차관리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경제교통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경제교통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교통행정과)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구(자동차관리과, 세무2과) 서울 강동구(주차행정과) 안산도시공사 성남시청(세원관리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797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안 별표3]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안 별표3]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 본 문 :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 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 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 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구청장 (노인장 애포)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처리 3. 장애인 등록·취소 및 장애 진단사 항 확인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 조의2, 제32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 행정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의 공급 및 판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 례」 제17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구청장 (도시 경관과)	1.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3.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업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구청장 (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0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0-128호(2020.08.0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칭: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2,117.3㎡
- 건축규모: 지상 1층, 연면적 2,260.2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2017.06.09. ~ 2021.04.01.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0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서창2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18-100호(2018. 9.14.)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서창2동 청사 신축공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8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서창2동 청사 신축공사

3. 사업규모

- A=1,40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재무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2018. 1.24. ~ 2021.04.08.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06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의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1)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함: (안 제7조제3항)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함: (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4.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청소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453-8493 FAX 453-2559

4. 참고사항

○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등록번호	청소행정과-10581
등록일자	2021. 04. 13.
결재일자	2021. 04. 13.
공개구분	부분공개 (5)

주무관	음식물자원화 담당	청소행정과장	환경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1. 4. 13.
협 조 자	청소행정담당 자원순환담당 폐기물관리담당 법무의회담당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요 지

구청장 결재

가. 자치법규 개정

☐ 개정사유

- 2) ○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의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3)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4)

☐ 주요내용

- 5)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함 (안 제7조제3항)
- 기존 가정용 20만원 ▶ **변경 가정용 30만원으로 상향**

< '21년 인천시 사업계획 >

- '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이월하여 '21년 상반기 사업 추진
- 가정용 감량기 600대, 150백만원 지원
 - 남동구 300대 60백만원, 계양구 300대 90백만원
 - * **남동구는 별도 조례에 따라 세대당 200천원 지원, 계양구 300천원 지원**
- '21년 인천시 군·구 사업 확대 예정(2,000대/600백만원)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함(안 제9조제4항)

☐ 행정사항

- 6) ○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 2021. 5월중
- 7) ○ 조례안 의회 상정 : 2021. 6월중
- 8) ○ 공포·시행 : 2021. 6월중

같이해요 여성친화, 함께가요 희망찬 남동구

여성친화 사전점검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컨설팅 또는 담당자 검토	○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컨설팅 또는 담당자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방법) 계획 수립 전 담당자 사전검토 또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 자문단 컨설팅 등	☐	☒	
구민 의견수렴 또는 구민 참여	○ 사업 추진 시 구민 의견 수렴 및 참여에 대한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방법)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지역 주민 등에게 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참여 유도	☐	☒	
사회약자 배려 사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사항이 검토되었는가? 검토대상)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동반 이용인 등	☐	☒	
공 간 접근성	○ 시설 구축 또는 행사 추진 시 구민 모두에게 접근이 편리한 지 검토되었는가? 검토대상)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동반 이용인 등	☐	☒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구청장 결재 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의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9) ○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의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10)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사항

- 11)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함: (안 제7조제3항)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함: (안 제9조제4항)
- 12)

3. 추진일정

- 13) ○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 2021. 5월중
- 14) ○ 조례안 의회 상정 : 2021. 6월중
- 15) ○ 공포·시행 : 2021. 6월중
- 16)
- 17)
- 18)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의 한도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유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규정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함 : (안 제7조제3항)
- 지원기준에 대한 조문내용을 수정함: (안 제9조제4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50퍼센트 범위 내”를 “100분의 50 범위”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u>50퍼센트 범위</u> 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u>20만원</u> ,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00분의 50 범위</u> ----- ----- <u>30만원</u> ----- -----.
제9조(보조금 지급) ① ~ ③ (생략)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u>준용한다</u> .	제9조(보조금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필요</u> ----- ----- <u>따른다</u>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09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적용 세목 정비 (안 제15조)
 - “주민세 재산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세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1층 세무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2361, FAX 453-23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적용 세목 정비 (안 제15조)
 - “주민세 재산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6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7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자료]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15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동부 지도자의 입상보상금 중복 금지 규정 삽입 (안 제14조 제4항)
- 합숙소근무자(조리사)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항, 제3조, 제8항, 제4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

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7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 입상 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성격의 입상보상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지도자의 경우 중복 지급되고 있어, 합리적인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동부 지도자의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중복 금지 규정 삽입 (안 제14조 제4항)
- 미운영 합숙소근무자(조리사) 규정 삭제 (안 제2조 제2항, 제3조 제8항, 제4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명, 합숙근무자(조리사) 1명”을 “6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감독, 코치,”를 “감독·코치 및”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독, 코치”를 “감독·코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6.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선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독·코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감독·코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가 및 경조사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를 “공가 및 경조사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감독 및 코치”를 “감독·코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선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연봉은 별표1”을 “선수의 연봉은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4”로, “범위 안에서”을 “범위에서 대회출전”로, “별표 5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4”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별표 7”을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사기양양을”을 “사기를 드높이기”로,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을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 대회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은 해당 종목별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8”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9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를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감독, 코치,”를 “감독·코치 및”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감독·코치 및 선수 등급별 연봉 (제3조제3항관련)

구 분	급 수	자 격 기 준	연 봉
감독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5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40,000,000원
코치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4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이 있는 자 ○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선수로 10년 이상 소속되어 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	30,000,000원
선수	1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연속하여 1위 입상자 ○ 최근 2년간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회 이상 1위 입상자	60,000,000원
	2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1위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2회 이상 1위 입상자	50,000,000원
	3급	○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	40,000,000원
	4급	○ 최근 2년간 각종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팀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이 추천한 자	30,000,000원

※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에는 순위가 높은 1개 종목만을 반영한다.

[별표 2]

대회출전 선전장려금(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300,000원	팀 당 500,000원	팀 당 200,000원	

[별표 3]

보상금 지급구분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보상금			종 목 별		지 급 액				
					1위	2위	3위		
			감독		250,000	150,000	100,000		
			코 치		200,000	100,000	70,000		
			선 수	전국규모	개 인	300,000	200,000		100,000
					계 주	명×200,000	명×150,000		명×70,000
				전국체전	개 인	500,000	300,000		200,000
					계 주	명×300,000	명×200,000		명×100,000
				아시아규모		1,000,000	700,000		500,000
				세계규모		3,000,000	2,000,000		1,000,000
기 록 구 분							지 급 액		
특 별 보상금			감독 코치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소속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1위			5,000,000	
			선 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 세계선수권대회 1위 ·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10,000,000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6,000,000	
					기 록 갱 신 보상금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별표 4]

성과금지급 점수산정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 계 선 수 권 대 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300점	200점	120점
전 국 체 육 대 회	200점	120점	80점
전 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비고 :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 상	①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④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⑤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별표 5]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급 수	유치비 지급기준	지 급 액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 신기록 수립자 및 부별 한국 신기록 수립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 선수인 자	70,000,000원
2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상비군인 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 신기록 수립자	50,000,000원
3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대회신기록 수립자	30,000,000원
4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15,000,000원

※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단체기록 인정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지급금액을 감할 수 있음

[별표 6]

훈련피복기준(연간)(제17조 관련)

구 분	운동복	유니폼	땀 복	파 카	운동화	경기용 신 발	가 방	T셔츠	기 타
지급량	3회	2회	2회	1회	3회	2회	1회	4회	필요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총원은 <u>9명</u> 으로 한다. 이 경우, 운동경기부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u>6명</u> , 합숙근무자(조리사) 1명으로 한다.	② ----- ----- <u>8명</u> ----- -- . ----- ----- <u>6명</u> ----- -----.
제3조(임용)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u>감독, 코치</u> , 선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u>감독, 코치</u> 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용) ① ----- ----- <u>감독 · 코치</u> 및 ----- ----- ----- ----- -----.
② 감독 · 코치 및 선수의 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6.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7. 지원 또는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7. ----- ----- (별지 제4호서식)

③ (생 략)

④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제4조(정년)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코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 60세

2. (생 략)

제6조(복무) ①·② (생 략)

③ 감독·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④·⑤ (생 략)

⑥ 감독·코치 및 선수는 휴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정년) ----- 선수-----

-----.

1. 감독·코치 -----

2. (현행과 같음)

제6조(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가 및 경조사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별지 제10호서식-----

기재하여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생 략)

제7조(훈련) ① ~ ③ (생 략)

④ 감독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8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감독 및 코치는 선수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
거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
회에서 4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10. (생 략)

11. 합숙소근무자(조리사)가 근
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또는 질병,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생 략)

제9조(합숙소 설치 운영) ①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훈련)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별지 제11호서식-----

-----.

제8조(면직)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감독·코치-----

10.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합숙소 설치 운영) ① (현행
과 같음)

② 합숙소에서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둘 수 있으며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 1부

제10조(보수 등) ①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2. (생략)

3.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연봉은 별표1과 같다.

②·③ (생략)

제14조(보상금)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별표 7에서 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5과 같다.

② 감독·코치 및 선수가 별표

<삭 제>

제10조(보수 등) ① -----
-- 선수-----

--.

1. 2. (현행과 같음)

3. ----- 선수의 연봉은 별표 1-----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금) ① -----
---- 별표 4-----

--- 범위에서 대회출전 ----
----- 별표 2와
-----.

② ----- 별표 4

7의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생략)

④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성과금 지급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되 제8조에 따라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감독·코치 및 선수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선양
한 경우에는 특별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⑦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 특별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별표 3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별표 4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③ ----- 사기를
드높이기 -----

----- 별표
3-----.

④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
----- . 다만,
감독·코치의 입상보상금과 특
별보상금은 해당 종목별 최고성

제15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생략)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생략)

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복무 기간 내에 제8조에 따라 면직 될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경기 중 사고로 인하여 근무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수선수 유치비 반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8조(퇴직금)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5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5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기간-----

---. -----

-----.

제17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

----- 별표 6과 ---
---.

제18조(퇴직금) ① -----
----- 사람에게

다.	--.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u>별지 제8호 서식</u> 의 퇴직금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② ----- <u>별지 제8호 서식</u> ----- ----- ----- ---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u>별지 제9호 서식</u> 의 퇴직금 지급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 ----- <u>별지 제9호서식</u> ----- ----- -----.
제19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u>감독, 코치, 선수</u> 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u>별지 제13호 서식</u> 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경력증명서 발급) ----- <u>감독 · 코치 및</u> ----- ----- <u>별지 제13호서식</u> ----- -----.

[참고자료]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수 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개정 2019. 6. 28.)
2.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3.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 - 81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인영 훼손에 따른 신조(폐기)
-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1. 4. 19.
- 신조(폐기) 공인 수 : 1개
- 신조[폐기] 공인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및규격(cm)
1	신조 공인	논현1동	논현1 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2	폐기 공인	논현1동	논현1 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 - 818호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5.

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인영 훼손에 따른 신조(폐기)
- 공인 최초 사용일(폐기일) : 2021. 4. 19.
- 신조(폐기) 공인 수 : 1개
- 신조(폐기) 공인내역

연번	구분	기 관 (부서명)	공인명	인영	서체및규격(cm)
1	신조 공인	논현1동	논현1 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2	폐기 공인	논현1동	논현1 동장인		2.4cm x 2.4cm 고인체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3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 4. 26.
3. 처 분 근 거 법 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21. 4. 9. ~ 2021. 4. 2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 번	업종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 자	소재지(도로명)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 록 폐업(말소) 일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2149	네츄럴웨이브	방O영	논고개로 61, 라피에스타 2층 214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2.28.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2161	만수야점핑하자	고O곤	만수로 21, 2층 일부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4.22.
3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2413	빛나점핑클럽	김O순	주안로 234, 2층 207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1.17.
4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2445	워니마켓	임O원	구월로46번길 30, 402호 (간석동, 대림맨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1.20.
5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3033	이지스킨 &다이어트	임O영	만수서로105번길 40-24, 만수주공11단지 상가 지하1층 비02호(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4.
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3470	네이처스토리	박O숙	남동대로916번길 6, 8층 806호 (간석동, 스카이다운)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6.22.
7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 -0203471	착한케이몰	김O준	앵고개로815번길 22, 316동 1106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3단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15.

6. 고 지 사 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라 2021. 4. 2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4월 9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34호

사업자등록 35호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1. 4. 27.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2021. 4. 12. ~ 2021. 4. 2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0 -019974 4	청해활어회수 산	김O향	인천 남동구 석정로 577, 1층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 12. 31.	2021. 4. 27.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4. 2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4월 1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3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1. 4. 29.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2021. 4. 14. ~ 2021. 4. 28.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9 -020315 1	뽕보집서창점	임O재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20, 1층 104호 (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 4. 8.	2021. 4. 29.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 4. 28.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4월 14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5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9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63 (간석동)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10 (만수동) 외 4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4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0-4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63 (간석동)	2009.07.10.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21.4.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 56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3을 건물번호로 부여	간석중앙공원 스타벅스DT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8-14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128번길 68-1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8-14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8-12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고잔로128번길 68-1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8-12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8-16 (고잔동)	2009.11.16.	논현고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논현고잔로128번길 68-1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8-16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5-16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1 (간석동)	2009.11.16.	풀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9.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풀무로26번길 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을 건물번호로 부여	비내린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10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108-5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66 (논현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진흥포장(주)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남촌도림동주민센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골로 19-19 (수산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53 (도림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49 (도림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19-4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19-1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19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 15-1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 15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25번길 31 (남촌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주)디앤디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62-18 (남촌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62-16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남촌동)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4번길 15-10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4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4-1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6-5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6-2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5-4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7번길 13-5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25-3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55-28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간석4동주민센터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3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1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33-6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08번길 40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3-1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17-6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17-4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45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62번길 28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70번길 18 (만수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동일빌라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54번길 54 (고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133 (고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24번길 5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52번길 10-1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52번길 10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효원빌리지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5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63-6 (구월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남동구 노인복지 회관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5번길 20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5번길 22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55번길 18 (간석동)	2021.4.9.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소로1-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2-3호선, 소로1-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설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0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2-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고잔동 소로2-3호선: L=225.1m, B=8.0m, A=2,269.8㎡
- 고잔동 소로1-5호선: L=141.5m, B=10.0m, A=1,717.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0.06.18. ~ 2022.12.31.
- 변경: 2020.06.18. ~ 2025.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 (소로2-3호선)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6-4	대	473	217.49	255.51	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2	논현동	156-5	대	378	99.09	278.91	박**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3	고잔동	155-11	대	152	99.81	52.19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4	고잔동	155-12	대	358	12.02	345.98	박** 외 2인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 **	
5	고잔동	155-19	도	166	29.72	136.68	황**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 **	
6	고잔동	155-18	대	147	105.76	41.24	이**	논현동 *** **	
7	고잔동	155-17	대	268	159.75	108.25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8	고잔동	155-14	대	502	153.04	348.96	성**	인천 남동구 포구로*** **	
9	고잔동	155-16	대	106	54.32	51.68	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	
10	고잔동	155-30	임	210	56.80	153.20	박**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11	고잔동	155-28	장	1384	98.03	1285.57	(주)바**	고잔동 *** **	
12	고잔동	155-39	임	305	38.58	266.42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13	고잔동	155-29	도	798	798.00	0.00	남동구	-	
							박** 외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	
14	고잔동	155-31	장	515	10.68	504.32	박**	경기도 동두천시 이담로 *** **	
15	고잔동	738-8	장	2798	10.75	2787.05	주식회사대*****	인천 남동구 고잔동 *** **	
16	고잔동	155-38	임	190	85.40	104.70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	
17	고잔동	189-8	임	176	20.18	155.82	주식회사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18	고잔동	155-23	장	794	6.43	787.07	오**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19	고잔동	186-8	도	316	116.81	199.19	남동구	-	
20	고잔동	188-2	도	289	17.01	271.99	국(건설부)	-	
21	고잔동	189-2	도	66	27.43	38.5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22	고잔동	188-1	도	1,916	50.24	1865.66	남동구	-	
23	고잔동	189-1	장	602	2.49	599.51	신**	시흥시 월곶동 *** **	
합 계				12,908.3	2,269.8	10,367.6			

용 지 조 서 (소로1-5호선)(변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9-2	도	3271	250.95	3020.25	남동구	-	남동구	-	기정
1-1	고잔동	159-2	도	3003.1		3003.1	남동구		남동구		변경
1-2	고잔동	159-6	도	268.1	268.1		남동구		남동구		변경
2	고잔동	159-1	전	18	4.97	13.03	남동구	-	남동구	-	
3	고잔동	161-3	장	2470	3.49	2466.51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4	고잔동	160-4	장	17	17	0.00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5	고잔동	159	전	551	25.18	525.82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6	고잔동	160-1	장	567	9.95	557.05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7	고잔동	160-3	대	174	173.22	0.78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			기정
7-1	고잔동	160-3	대	4.3		4.3					변경
7-2	고잔동	160-6	대	169.7	169.7						변경
8	고잔동	586-63	도	3,145	43.44	3101.66	국(건설부)	-	국(건설부)	-	기정
8-1	고잔동	586-63	도로	153.3		153.3					변경
8-2	고잔동	586-72	도로	39.4	39.4						변경
8-3	고잔동	586-73	도로	2952.4		2952.4					변경
9	고잔동	157-2	전	32	32.00	0.0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고잔동	157	장	955	4.98	950.02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11	고잔동	156-9	대	163	153.85	9.35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	기정
									현**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국 서대문***		
11-1	고잔동	156-9	대	11.6		11.6					변경
11-2	고잔동	156-10	대	151.6	151.6						변경
12	고잔동	156-3	주	1211	19.43	1191.07	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	
									현**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국 서대문***		
13	고잔동	155-8	대	902	474.21	427.79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			기정
13-1	고잔동	155-8	대	318.7		318.7					변경
13-2	고잔동	155-43	대	304.9	304.9						변경
13-3	고잔동	155-44	대	278.4		278.4					변경
14	고잔동	155-35	대	277	55.32	221.68	디**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15	고잔동	155-9	대	214	15.57	197.93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주식회사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16	고잔동	155-37	대	200	200.00	0.00	이**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주식회사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17	고잔동	155	전	1,722	3.63	1718.37	디**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18	고잔동	155-34	전	41	41.00	0.00	디**주식사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19	고잔동	155-5	대	205	27.56	177.44	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기정
19-1	고잔동	155-5	대	186.6		186.6					변경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9-2	고잔동	155-42	대	18.4	18.4						변경
20	고잔동	155-4	대	1088.6	162.14	926.46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길 *** **	주식회사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기정
20-1	고잔동	155-4	대	927.1		927.1					변경
20-2	고잔동	155-40	대	147.4	147.4						변경
20-3	고잔동	155-41	대	14.1		14.1					변경
합 계				17,223.1	1,717.9	15,505.2					

지 장 물 조 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물 건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동	155-35	계단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	고잔동	155-35	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3	고잔동	157-2	컨테이너	백** 외 2인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3 ***	
4	고잔동	159	컨테이너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5	고잔동	155-8	간이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6	고잔동	155-8	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7	고잔동	155-8	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8	고잔동	155-8	간이건물	오**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9	고잔동	155-18	건물	이**	논현동 ***	
10	고잔동	155-17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제1605호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11	고잔동	155-17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2	고잔동	155-16	건물	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삼산타운 610-1201	
		155-30	건물	박** 외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삼산타운 610-1201	
		155-14	건물	손**	***	
13	고잔동	155-14	건물	손**	***	
		155-29	건물	남동구	-	
		155-39	건물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14	고잔동	155-2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5	고잔동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155-38	간이건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16	고잔동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189-6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38	간이건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	
		586-63	간이건물	국(건설부)	-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7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55-10	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8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9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0	고잔동	156-4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1	고잔동	156-5	건물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제1605호 155-11	건물	남동구 구보 홍**	2021. 4. 15 목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	
22	고잔동	155-11	건물	홍**	인천광역시 연수구 ***	
23	고잔동	155-18	건물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24	고잔동	189-6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586-63	간이건물	국(건설부)	-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25	고잔동	189-8	간이건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155-29	간이건물	남동구	-	
26	고잔동	189-1	간이건물	신**	시흥시 월곶동 1016번지 ***	
		189-2	간이건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한 전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16.1	우	-	한국전력	(1-5호선)
2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62.5	좌	8716F531	한국전력	(1-5호선)
3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06.8	우	8716F731	한국전력	(2-3호선)
4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37.5	좌	8716F822	한국전력	(2-3호선)
5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62.0	우	8716F721	한국전력	(2-3호선)

남동구 구보

6	제1605호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88.2	우	8716F711	2021. 4. 15. 목요일 한국전력	(2-3호선)
7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21.3	좌	8716F712	한국전력	(2-3호선)

통 신 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38.0	우			(1-5호선)
2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12.7	우			(2-3호선)
3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59.4	우			(2-3호선)
4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79.9	우			(2-3호선)
5	인천 남동구 고잔동	0+196.6	우			(2-3호선)
6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18.6	우			(2-3호선)
7	인천 남동구 고잔동	0+220.9	좌			(2-3호선)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1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건설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04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1-1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L=380.0m, B=10.0m, A=3,549.4㎡
- 변경: L=380.0m, B=10.0m, A=3,562.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 변경: 실시계획고시일 ~ 2025.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용 지 조 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고잔동	350-30	장	2	2	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2	고잔동	350-34	도	1	1	0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				
3	고잔동	350-28	답	1	1	0	남동구	-				
4	고잔동	586-33	도	10	10	0	국(건설 부)	-				
5	고잔동	374-2	답	460	460	0	고** 외 2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6	고잔동	586-67	도	1,171	62	1,109	국(건설 부)	-				
7	고잔동	373-3	답	186	166	2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				
8	고잔동	372-39	답	127	127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9	고잔동	372-41	전	58	58	0	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 **				
10	고잔동	372-32	전	157	157	0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11	고잔동	375-2	답	288	288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12	고잔동	372-38	답	16	16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				
12-1	고잔동	379-30	전	43	43	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12-2	고잔동	379-22	잡	122	7	115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13	고잔동	379-29	전	41	41	0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제1605호							남동구 구보 ***		2021. 4. 15. 목요일		지상권	
14	고잔동	372-16	장	1,936	2	1,934	김**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				
15	고잔동	376-2	전	375	375	0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				
16	고잔동	372-49	전	98	98	0	강** 외 3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인**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	근저당권 지상권	
17	고잔동	372-64	전	11	11	0	여** 외 4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	근저당권	
18	고잔동	377-2	전	682	639	43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 중앙로 ***	근저당권 지상권	
19	고잔동	409-8	잡	1,103	8	1,095	김** 외 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	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근저당권	
20	고잔동	409-34	답	237	136	101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근저당권	기정
20-1	고잔동	409-34	답	67	0	67						변경
20-2	고잔동	409-40	답	165	165	0						변경
20-3	고잔동	409-41	답	5	0	5						변경
21	고잔동	409-31	도	11	11	0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근저당권	
22	고잔동	408	잡	1,593	657	936	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				기정
22-1	고잔동	408	잡	954	0	954						변경
22-2	고잔동	408-4	잡	639	639	0						변경
23	고잔동	379-6	도	4,002	156	3,846	남동구	-				
24	고잔동	374	장	1,407	15	1,392	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25	논현동	738-8	공	247,750	2	247,748	남동구	-				
26	고잔동	379-2	잡	780	2	778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	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기정
26-1	고잔동	379-2	잡	778	0	778						변경

26-2	고잔동	379-34	제1605호 잡	2	2	0	남동구 구보		2021. 4. 15. 목요일		변경
기 정		합 계		262,888	3,549	258,339					
변 경		합 계		262,668	3,562	259,106					

지 장 물 건 조 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수 량 (개소)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고잔	374-2	EGI웬스	출입문	웬스	584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계근대	철재			1			
			기타	집계	배전반		2			
2	고잔	372-32	철망+강관	출입문	웬스	119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화단	라일락			3			
				백일홍			3			
				기타						
			컨테이너	휴게소			1			
				창고			1			
3	고잔	372-16	PE제품	저장시설	Φ1500		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	
					Φ800		1			
			모터기				1			
			기계장치	냉각수			1			
			저장소	LPG	바닥기초	1	1			
4	고잔	376-2	철재	출입문		14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5	고잔	376-2	철재	웬스		127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6	고잔	377-2	메쉬웬스	출입문		18		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컨테이너	휴게소			1			
			컨테이너	창고			1			
7	고잔	409-34	천막+강관	창고		16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컨테이너	사무실			1			
			컨테이너	창고			2			

남동구 구보

8	고잔	408	제1605호 철재	웬스	출입문	514		권**	2021. 4. 15. 목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천막+강관	창고		135				
			컨테이너	사무실			1			
			컨테이너	창고			1			
소 계						1,679	30			

한 전 주 조 서(변경없음)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74-2	2,008	좌측	8716X 981	한국전력	소로-10호선
2	"	586-2	3,002	우측	8716X 995	한국전력	"
3	"	372-39	3,018	"	8716X 993	한국전력	"
4	"	372-39	4,006	"	8716X 994	한국전력	"
5	"	409-34	14,013	"	8816C 032	한국전력	"

체 신 주 조 서(변경없음)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 치(STA)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남동구 고잔동	374-5	NO.3+002.00	우측		한국통신	소로1-10호선